

기관명

수 신

(경유)

제 목 취업자 통보서 송부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취업자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.

취업자 통보서						
고용 의무 자	업체등명					
	대표자명			전화번호		
	소재지					
취업지원 대상자	보훈번호			국가유공자 와의 관계		
	성명			생년월일 (성별)	()	학력
	주소				전화번호	
고용 결과	근무부서		직급 등	직종		
	고용일		월임금	보훈특별고용 통지서 번호		제 호
	고용형태	[] 정규직			[] (무기)계약직	
		[] 기간제(년 월 일 ~ 년 월 일)			[] 정규직전환(전환예정일자) [] 무기계약직전환(전환예정일자) [] 전환없음	
고용방법		[] 보훈특별고용 [] 채용시험 가점				

※ 유의사항

- 월임금 : 기본급, 상여금, 수당 등 일체의 급여를 합산한 월평균 금액입니다.
- 위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 취업자 통보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통보서 서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취업정보시스템(<http://job.mpva.go.kr>)에서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끝.

발 신 명 의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

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 ()

팩스번호 ()

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